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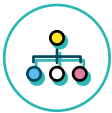
## 주식 권리관리 세부 서비스



소유자증명서(실질주주증명서) 발급



실기주과실 관리



유·무상증자 및 배당



주식병합(합병, 자본감소 등)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외국인 의결권 행사



## 주식 — 권리관리 — 서비스

주식 권리관리 서비스 안내

[www.ksd.or.kr](http://www.ksd.or.kr)

서비스안내  
✓  
권리관리  
✓  
주식권리

심익조정필(리스크-1603, 2020.07.17.)

Corporate Action Service

### 주식 권리관리 서비스 문의처

Tel. 02-3774-3238, 3275~3277, 3288, 3289, 3461

Fax. 02-3774-3244, 3245

**KSD**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예탁)주식의 발행회사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소유자(실질주주)명세를 작성하고 해당 주식  
소유자(실질주주)의 각종 권리행사를 지원합니다.

## 실기주과실 조회하기

실기주의 권리행사로부터  
파생되는 현금(배당금, 단주대금) 및  
주식(무상주식, 배당주식)을 의미하는  
실기주과실(果實)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실기주는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을 반환받은 자가  
발행회사의 주주명부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① 홈페이지([www.ksd.or.kr](http://www.ksd.or.kr))



② e-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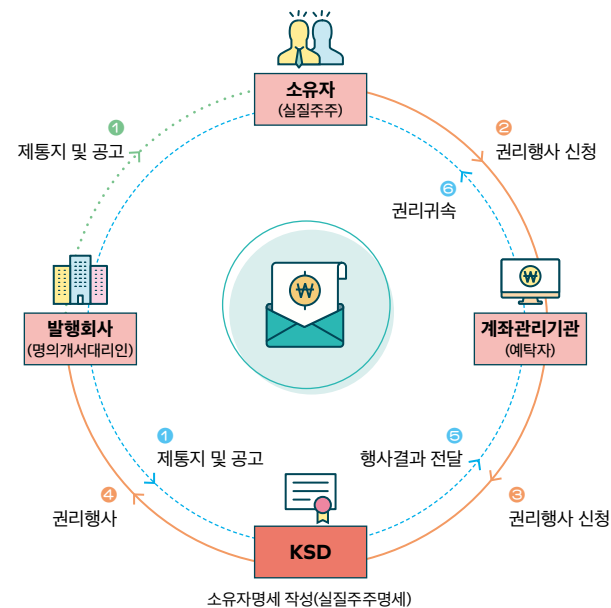


③ 실기주과실 조회하기

## ① 전자등록(예탁)주식 권리행사

- 전자등록(예탁)주식의 발행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이하 “기준일”)을 정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소유자명세(실질주주명세)를 작성하여 발행회사(명의개서대리인)에 통지합니다. 소유자(실질주주)는 계좌관리기관(예탁자)을 통해 권리 행사를 신청함으로써 주주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소유자(실질주주)의 신청에 의한 권리행사를 지원하며, 예탁주식의 경우 일정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 2) 주식권리행사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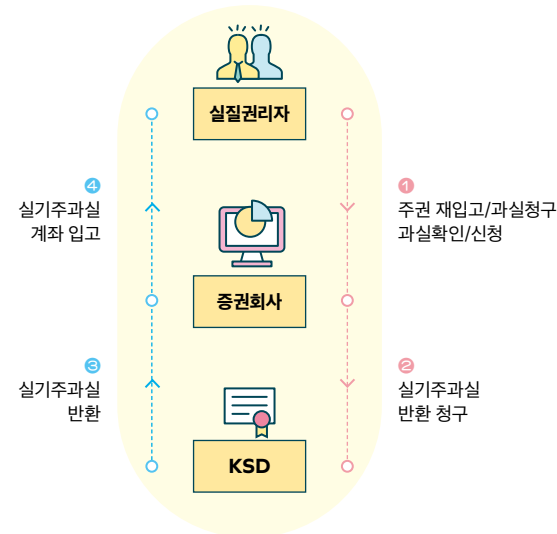
### 3 전자등록(예탁)주식의 권리행사 서비스 세부내용

 **소유자증명서(실질주주증명서)**

- 소수자(실질주주)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소수자증명서(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아 발행회사에 제출할 경우 소수주주권 등 개별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소수자(실질주주)는 계좌관리기관(예탁자)에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권리행사기간 동안 일체의 처분행위가 제한됩니다.

₩ 실기주과실 관리

-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에 대하여 배정되는 주식 또는 현금 (실기주과실)을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여 관리합니다.
- 실기주권을 출고 또는 재입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을 청구하여 실기주과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유·무상증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기준일 현재 시점의 소유자(실질주주)에 대한 배정명세를  
작성하며, 소유자(실질주주)의 계좌관리기관(예탁자)을 통한  
청약접수를 지원합니다.

#### 4 주식권리관리 서비스 장점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예탁)주식에 대한 배당, 유·무상증자(감자),  
의결권 등 제반 권리행사를 위한 모든 사무를  
대신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좌관리기관(예탁자) 및 소유자(실질주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간단한 신청만으로  
보유주식의 권리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